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8. 14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제20조,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,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양O아	94.11.12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및 3년간 재참여 제한	○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미제출 ○출석통지 2회 미출석 및 연락두절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○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8. 14. ~ 2026. 8. 28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김소연(Tel. 031-644-381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